
2026년도 제10차 이사회

2026. 9. 15.

KEF 사단
법인 대한승마협회

목 차

I. 보고사항

1. 전차 회의록 초록	3
--------------------	---

II. 심의사항

1. 협회 정관 개정안	4
2.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7
3. 각종 규정 개정안	11
4. 공인심판 관리 시행세칙 개정안	14
5. 승마대회 말 복지 가이드라인 제정(안)	15
6. 카페리 선박 내 말 수송차량 전력공급 건의(안) ...	17

보고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회의
	제10차 이사회-보고-제1호	2026. 9. 15.	2026년도 제10차 이사회

1 전차 회의록 초록

- 2026년도 제9차 이사회는 2026년 7월 10일(금)~11(토) 서면결의로 총 임원 19명 중 12명 회신 및 찬성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보고사항으로 전차 회의록 초록에 대하여 원안 접수하여 주셨습니다.
- 심의사항으로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과 2026년도 제9차 경기력향상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위임 이상 2건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회의
	제10차 이사회-심의-제1호	2026. 9. 15.	2026년도 제10차 이사회

1 협회 정관 개정안

□ 의결주문

- 협회 정관 개정안을 심의·주문함

□ 제안사유

- 2026년도 제5차 스포츠공정위원회(2026. 9. 10.)에서 ‘협회 정관 개정안’ 원안 동의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개정(2026. 8. 26.) 반영
- 협회 회장선거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장선출기구 구성 체계를 개선하고, 종목별 특성과 조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구성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9조】 회장선출기구 구성 체계 개선
 - (제3항 개정) 회장선출기구의 선거인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일률적인 인원 기준을 삭제하여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기반 마련
 - (제4항 개정) 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되, 종목의 특성, 등록 인원 및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선출기구의 규모 및 인적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부칙 제3조】 회장선출기구 개정규정 적용례 마련
 - 개정규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협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감사, 수사 또는 사회적 물의 등으로 회장선출기구 변경이 필요하다고

체육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부칙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기 적용되는 협회의 회장선거에는 「회장선거관리규정」 부칙(2027. 00. 00.) 제3조 미적용

□ 「협회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 고
제19조(회장 선출기구)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u>대의원, 선수, 지도자, 심판, 동호인 등으로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자, 심판, 동호인의 경우에는 협회 임직원은 제외한다.</u> <개정 2019. 4. 4., 2023. 3. 28, 2025. 3. 13.> ④ 협회의 <u>제3항에 따른</u> 회장선출기구 인적 구성은 체육회 <u>정관 제24조를</u>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4.>	제19조(회장 선출기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u>다음 각 호의 사람을 선거인으로 구성하되, 동일인이 둘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의 선거인으로 본다. 다만, 협회 임직원은 제외한다.</u> <개정 2019. 4. 4., 2023. 3. 28, 2025. 3. 13., <u>2027. 00. 00.</u>> <u>1.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대의원</u> <u>2.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종목 단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및 대의원</u> <u>3. 체육회가 구축·운영하는 경기인 등록시스템에 해당 종목의 경기인으로 등록된 사람(단,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협회의 자체전산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기인 포함 가능)</u> ④ 협회의 회장선출기구의 <u>규모 및 인적 구성은 제3항에 따르고, 그밖에</u> 체육회 「<u>회장선거관리규정</u>」 제8조제2항부터 제4항,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하되, 협회는 종목 특성, 등록인원,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	■ 회장선출기구 구성 체계 개편 및 선거인 범위 확대 ■ 「정관」 제24조 준용하여 명시 ■ 종목 특성 등을 반영한 탄력적인 회장선출기구 구성 근거 마련

현행	개정안	비 고
	정 2019. 4. 4., 2027. 00. 00.>	
<신 설>	부 칙 (2027. 00. 00.) 제3조(회장선출기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협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서 정한 날 이전에 실시하는 회장선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감사, 수사, 사회적 물의 등으로 협회의 회장선출기구 구성 변경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에서 정한 날 이전에 실시하는 협회의 회장선거에도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협회의 회장선거에는 「회장선거관리규정」 부칙(2027. 00. 00.) 제3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 회장선출기구 개정 규정 적용례 신설 ■ 개정 회장선거관리 규정 준용 범위 관련 구체화

☐ 심의결과: 협회 정관 개정안 원안 승인

☐ 별첨[1-1]: 협회 정관 전문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회의
	제10차 이사회-심의-제2호	2026. 9. 15.	2026년도 제10차 이사회

2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 의결주문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심의·주문함

□ 개정사유

- 2026년도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2026. 8. 13.)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원안 동의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2026. 7. 22.) 반영
- (회원단체 스포공위 공정성 제고)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4조 제3항 개정을 통해 추천위원회 추천단체 및 주무부처 협의를 명시하는 등 스포츠공정위원회 공정성을 강화하였으나, 회원단체의 경우 대한체육회와 동일한 절차 및 구성요건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워 예외조항*에 따라 각 회원단체 여건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음. 그럼에도 회원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바, 대한체육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 (추천위 추천기관 신설) 추천기관별 추천역량의 한계를 고려해 지방변호사회, 지방언론인협회, 지자체 등으로 추천기관을 변경해 신설
 - (위원 자격요건 강화) 위원 자격요건을 체육회 수준으로 강화하여 구성

□ 주요내용

- (제5조제4항 신설) 회원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절차 및 위원 구성요건 명시
- (제43조제2항제1호 삭제) 회원단체의 위원회 구성 관련 예외조항 삭제
- (제25조 개정) 말복지 위반에 대한 징계 대상 추가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5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기자연맹,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주무부처 등 관계기관 및 체육회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9. 1.>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u><신 설></u>	제5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체육회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이 회장에게 위임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기자연맹,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주무부처 등 관계기관 및 체육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을 선임하고, 기관별 추천인원은 체육회와 주무부처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 9. 1., 2026. 9. 15.>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체육회 관계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이 회장에게 위임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해당 지방변호사회, 한국체육학회, 지방언론인협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을 선임한다. 다만, 해당 단체에서 자체 추천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0% 이내로 한다. <신설 2026. 9. 15.>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 체육회 관계단체 (회원종목단체, 회원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요건 명시

현행	개정안	비고
④ 정관 제43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2. 21.> ⑤~⑥ “생략”	<u>이상 종사한 사람</u> 2. <u>스포츠 또는 법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u> 3. <u>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4. <u>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⑤ 정관 제38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2. 21.> ⑥~⑦ “번호 이동”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 1~9 “생략” <u><신 설></u> 10. 징계 중인 자가 행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행위 <신설 2024. 6. 21.>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행위 <신설 2024. 6. 21.> <개정 2025. 4. 21.> ②~⑧ “생략”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 1~9 “현행과 같음” 10. <u>말 복지 위반<신설 2026. 9. 15.></u> 11. 징계 중인 자가 행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행위 <신설 2024. 6. 21.> <개정 2026. 9. 15.>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행위 <신설 2024. 6. 21.> <개정 2025. 4. 21., 2026. 9. 15.> ②~⑧ “현행과 같음”	■ 말복지 위반에 대한 징계 대상 추가
제43조(규정 제·개정) ① “생략” ② “생략” <개정 2022. 1. 24.> 1. 제4조 (위원회 구성) 2~3. “생략” ③ “생략”	제43조(규정 제·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개정 2022. 1. 24.> 1. 제4조 (위원회 구성) <u>삭제 <2026. 9. 15.></u> 2~3. “생략” ③ “생략”	■ 위원회 구성 관련 예외조항 삭제
<u><신 설></u>	<u>부 칙(2026. 9. 15.)</u> <u>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 부터 시행한다.</u>	■ 시행일 명시
[별표 1] <개정 2019. 3. 5, 2020. 1. 21, 2020. 11. 9, 2021. 3. 25, 2021. 8. 13, 2022. 3. 22., 2023. 1. 27.,	[별표 1] <개정 2019. 3. 5, 2020. 1. 21, 2020. 11. 9, 2021. 3. 25, 2021. 8. 13, 2022. 3. 22., 2023. 1. 27.,	

현행	개정안	비고				
2026. 4. 15.>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1조제2항 관련) 1.~15. “생략” <u><신 설></u>	2026. 4. 15., <u>2026. 9. 15.></u>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1조제2항 관련) 1.~15. “현행과 같음” <u>16. 말 복지 위반(말에 대하여 신체 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말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반하는 행 위)</u> <table><tr><td><u>징계대상</u></td><td><u>징계기준</u></td></tr><tr><td colspan="2"><u>본 협회 『말 복지 위반행위 징계 양형기준』에 따른다.』</u></td></tr></table>	<u>징계대상</u>	<u>징계기준</u>	<u>본 협회 『말 복지 위반행위 징계 양형기준』에 따른다.』</u>		
<u>징계대상</u>	<u>징계기준</u>					
<u>본 협회 『말 복지 위반행위 징계 양형기준』에 따른다.』</u>						

- ☐ **심의결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원안 승인**
- ☐ **별첨[2-1]: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전문**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회의
	제10차 이사회-심의-제3호	2026. 9. 15.	2026년도 제10차 이사회

3 위원회 규정 개정안

□ 의결주문

- 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주문함

□ 개정사유

- 2026년도 제5차 스포츠공정위원회(2026. 9. 10.)에서 ‘위원회 규정 개정안’ 원안 동의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2026. 6. 25.) 「위원회 위원(선수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은 다른 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사항 반영

□ 주요내용

- 본 협회가 운영하는 위원회 중 선수위원회(선수 또는 선수출신자로 구성) 위원의 타 위원회 위원 겸임 규정 반영
- 선수위원회 규정, 생활체육위원회 규정, 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말복지위원회 규정 이상 4개 위원회 규정 개정
- 등록 선수가 위원이 될 수 없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지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는 심판위원회, 법률 및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직원 인사 관련 인사위원회에는 겸임 사항 별도 미 표기

○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고
제5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③ “생략” ④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u>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u> 3~5. “생략” ⑤~⑥ “생략”	제5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u><개정 2026. 9. 15.></u> 1. “현행과 같음” 2.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u>있다.</u> 3~5.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 타 위원회 위원 겸임 가능
<u><신 설></u>	<u>부 칙(2026. 9. 15.)</u> <u>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	

○ 생활체육위원회 규정 개정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고
제5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③ “생략” ④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u>각 위원회의 위원은</u>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3. “생략” ⑤~⑥ “생략”	제5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u><개정 2026. 9. 15.></u> 1. “현행과 같음” 2. <u>위원회의 위원(선수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은</u>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3.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 타 위원회 위원 겸임 가능
<u><신 설></u>	<u>부 칙(2026. 9. 15.)</u> <u>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	

○ 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규정 개정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5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③ “생략” ④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u>각 위원회의 위원은</u>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3. “생략” ⑤ “생략”	제5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5.> 1. “현행과 같음” 2. <u>위원회의 위원(선수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u> 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타 위원회 위원 겸임 가능
<u><신 설></u>	<u>부 칙(2026. 9. 15.)</u> <u>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	

○ 말복지위원회 규정 개정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5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③ “생략” ④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u>위원회의 위원은</u>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3.~5. “생략” ⑤ “생략”	제5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5.> 1. “현행과 같음” 2. <u>위원회의 위원(선수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u> 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3.~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타 위원회 위원 겸임 가능
<u><신 설></u>	<u>부 칙(2026. 9. 15.)</u> <u>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	

□ **심의결과: 위원회 규정 개정안 원안 승인**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회의
	제10차 이사회-심의-제4호	2026. 9. 15.	2026년도 제10차 이사회

4 공인심판 관리 시행세칙 개정안

□ 의결주문

- 공인심판 관리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주문함

□ 제안사유

- 2026년도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2026. 8. 13.)에서 ‘공인심판 관리 시행세칙 개정안’ 원안 동의
- 2026년도 제4차 심판위원회(2026. 8. 6.)에서 ‘공인심판 관리 시행세칙 개정안’ 원안 동의
- 마장마술 수습 심판 양성을 위한 Sit-in, Shadow Judging 운영 방법 체계화
- 본 협회에서 종합마술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지만, 종합마술 코스 디자이너 자격 취득 양성 필요

□ 주요내용

- 마장마술 3* 자격 보유자를 Mentor Judge 지정하고, 해당 인원이 마장마술 수습 심판 자격 보유자가 대회 참여 시 Sit-in, Shadow Judge 평가지를 바탕으로 평가 시행
- 제13조(코스 디자이너 자격 부여) 제2항에 FEI CCI1* 공인 시합 5회 이상 (2*이상 3회 이상) 출전 또는 국내 시합(CCN 1*급 5회 이상 출전) 선수 경력을 가진 자가 종합마술 코스 디자이너 강습회 2회 이상 수료하고 공인대회 Course Assistant 경험 4회 이상을 거쳤을 때 가장 낮은 등급의 자격 부여를 심판위원회는 추천하고 이사회가 심의/승인

□ 심의결과: 공인심판 관리 시행세칙 개정안 원안 승인

□ 별첨[4-1]: 공인심판 관리 시행세칙 전문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회의
	제10차 이사회-심의-제5호	2026. 9. 15.	2026년도 제10차 이사회

5 승마대회 말 복지 가이드라인 제정(안)

□ 의결주문

- 승마대회 말 복지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주문함

□ 제안사유

- 2026년도 제1차 말복지위원회(2026. 8. 19)에서 ‘승마대회 말 복지 가이드라인 제정(안)’ 원안 동의
-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말을 단순한 경기 수단이 아닌 동반자로 존중하는 청정 스포츠로서의 승마 위상을 확립하고, 대중적 신뢰를 확보하여 선진 승마 문화를 선도하고자 함
- 국제승마연맹(FEI) 및 해외 말산업 선진국가의 말 복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내 승마대회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 국내 대회의 질적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이드라인 주요 사항
 - 제1장(총칙) : 가이드라인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 말 복지 기본원칙
 - 제2장(승마대회 조직 및 책임) : 수의위원 배치, 말 복지 감독관 운영
 - 제3장(출전마관리 및 기준) : 대회 참가마 관리, 출전 적합성, 출전 제한, 연령 및 출전횟수 제한
 - 제4장(운송 및 이동) : 운송 원칙, 장거리 운송
 - 제5장(대회장 시설기준) : 마방, 경기장 및 연습장

- 제6장(대회운영 및 말 복지) 경기 전 검사, 경기 중 말 복지, 경기 후 말 복지, 기후 대응
- 제7장(도핑 및 약물관리) 도핑 및 약물관리
- 제8장(응급 및 안전관리) 응급 대응체계
- 제9장(교육 및 준수사항) 교육, 준수사항
- 제10장(신고 및 제재) 말 복지위반 신고, 말 복지위반 제재 준수사항
- 승마대회의 관계자, 참가자, 주최자, 심판 및 운영요원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말복지를 위한 책임 및 기본 원칙 설정
- 국내 승마대회 상황에 맞춰 수정 및 보완 사항 검토 필요
- 향후 시도승마협회 및 승마장에 가이드라인 배포 계획

- ☐ **심의결과 : 승마대회 말 복지 가이드라인 제정(안) 원안 승인**
- ☐ **별첨[5-1]: 승마대회 말복지 가이드라인 1부.**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회의
	제10차 이사회-심의-제6호	2026. 9. 15.	2026년도 제10차 이사회

6 카페리 선박 내 말 수송차량 전력공급 건의(안)

□ 의결주문

- 카페리 선박 내 말 수송차량 전력공급 건의(안)을 심의·주문함

□ 제안사유

- 2026년도 제1차 밀복지위원회(2026. 8. 19)에서 ‘카페리 선박 내 말 수송차량 전력공급 건의(안)’ 원안 동의
- 제주-내륙 간 경마시행 및 승마대회 출전을 위해 연간 수천마리 말이 카페리로 운송되고 있음
- 선박 안전 규정상 운항 중 차량 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말 수송차량에 전력을 공급할 별도 설비가 없어 하절기 밀폐된 수송칸 내 온도가 급상승함
- 이로 인해, 매년 수송열, 탈진 등으로 인한 보건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때로는 열사병으로 인한 폐사에 이르기까지 마주의 막대한 재산 피해와 동물 학대 논란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음.
- 현행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말 수송 차량에 대한 전력 공급을 제도화함으로써 동물 복지를 실현하고 안전한 해운 환경을 조성하며 新정부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에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 개정 건의 추진

구분	현행	개정 건의(안)
제1항	활어 운반차량을 탑재하는 카페리선박의 폐워된 차량구역에는 활어운반차량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릴리드(Reel Lead) 전선을 적재되는 차량의 수만큼 비치하여야 한다.	활어 <u>및 동물(말 등)</u> 운반차량을 탑재하는.... 활어 <u>및 동물(말 등)</u> 운반차량에 전원을....
제2항	활어 운반차량이 선박 운항 중 전기적 산소공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제동장치를 끄고 선박전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활어 <u>및 동물(말 등)</u> 운반차량이... 산소공급장치 <u>및 온도조절장치</u> ...

○ 추진방안

- 한국마사회와 함께 농식품부를 통해 해수부에 건의
- 협회 및 유관단체가 주최하는 대회 및 사업에서 승마 선수 및 지도자 등 승마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준 개정을 요청하는 서명 접수

- ☐ **심의결과 : 카페리 선박 내 말 수송차량 전력공급 건의(안) 원안 승인**
- ☐ **별첨[6-1]: 카페리 선박 내 말 수송차량 전력공급 제안서 1부.**